

#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7.22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7월 14일 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7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7월 22일

(제150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중등교육국장 최성태)

### 가. 제안이유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합리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“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8제3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, 제73조, 제81조 및 제92조”로 함 (안 제1조)
- “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1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2항”으로 함 (안 제2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상위법령인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상위법개정(98.2)후 조례개정(98.7)의 지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임

### 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나. 신구조문대비표